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의 개 인 정 보 처 리 에 관 한 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인·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7.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발
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
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른 수사처규칙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
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연 락 처	(02) 2100 - 1969